

서울주얼리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
------	-----

2014. 12. 4.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4. 12. 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 안 설 명 의 요 지 (경 제 진 흥 실 장 서 동 록)

가. 제안이유

- 종로주얼리산업은 전국 주얼리산업 규모의 50%(2조 7천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업체가 감소하고 있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낙후로 원재료

대비 부가가치가 저조한 실정으로 서울시 주얼리산업업체 중 10인미만 업체가 98%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주얼리센터 설치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개발, 교육지원,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설치·운영 개요

- 시 설 명 : 서울주얼리센터(제1,2센터)
- 규 모 : 약 1,063 $m^2$ 
  - 1센터 : 338.25 $m^2$ , '15.6월 준공예정
  - 2센터 : 725 $m^2$ , '16.12월 준공예정
- 공간구성 : 사무실 및 회의실, 감정장비실, 전시 및 체험관, 수장고 등

### 2.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대 상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귀금속·보석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업무
  - 시설물 관리·운영
  -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경영컨설팅
  - 감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사업
  - 기타 주얼리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소요예산 : 846백만원(2015년)

###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주얼리산업발전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주얼리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내 주얼리 비즈니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거점시설인 서울주얼리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해당 산업을 고부가가치 도시형 제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경과

- 주얼리 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브랜드·디자인·패션·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시의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이 기대됨.
- 지난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도도 진행 중인 상황임.
- 종로 일대는 3,002개의 귀금속 관련 사업체에 6,018명이 종사하는 등 전국 주얼리산업 규모의 50%(약 2조 7천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주얼리산업 밀집지역임.

〈표 1〉 종로 귀금속 산업현황

구분	지역	개소/명	비고
사업체 수(개소)	전국	18,895	
	서울시	6,907	36.6%(전국대비)
	종로구	3,002	43.4%(서울시대비)
종사자 수(명)	전국	51,948	
	서울시	17,310	33.3%(전국대비)
	종로구	6,018	34.8%(서울시대비)

※ 서울시자료(2012년 기준)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심형 귀금속 제조·유통업 지

역인 해당 지역은 2002년을 정점으로 세계적 경기불황과 원자재 가격상승, 대형할인점과 온라인시장 확대로 로드숍 형태의 종로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음.

- 서울시(이하 “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 1월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를 ‘종로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앵커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산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

- 위 치 :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140,855㎡)
- 권장업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산업(주업종),  
귀금속 및 관련제품 판매·수리·도금업(보조업종)

- 이후 2012년 시장방침으로 진흥지구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년 1월 종로구청장은 ‘종로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고시’하는 등 관련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 다. 서울주얼리센터 설치 및 운영개요

- 서울주얼리센터(이하 “센터”)는 주얼리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지원시설(앵커시설)로 현재 종로구 권농동 일대에 1,2센터로 나뉘어 조성중임(참고자료 2).

- 시는 센터를 감정지원, 전문인력 교육,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업체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서울주얼리산업의 핵심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2센터가 개관되는 2016년 이외에는 기존의 기능외에 유통 및 제조, 해외수출 및 창업지원, 주얼리산업정보 및 소비자 보호지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 국내 주얼리 산업의 영세성 극복과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표시제도의 구축, 기술개발과 마케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시스템 마련, 무자료거래를 비롯한 유통질서의 후진성 극복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시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경영지원,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관련 법인 혹은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관련사업의 전문성이나 특성을 고려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이후 사업운영권 회수가 사

실상 곤란하고 인건비를 비롯해 매년 상당한 위탁금이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해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아울러,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센터 업무의 범위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다수의 경쟁력있는 수탁자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감사연구원은 2013년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sup>1)</sup>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용절감, 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분석보다 정당성 확보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대상사무나 위탁기관 선정 등의 제반 절차에 있어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 감사원 감사연구원(201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주얼리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종로주얼리산업은 전국 주얼리산업 규모의 50%(2조 7천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업체가 감소하고 있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낙후로 원재료 대비 부가가치가 저조한 실정으로 서울시 주얼리산업업체 중 10인미만 업체가 98%를 차지하고 있음
- 나. 서울주얼리센터 설치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개발, 교육지원,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설치·운영 개요

- 시설명 : 서울주얼리센터(제1,2센터)
- 규모 : 약 1,063 $m^2$ 
  - 1센터 : 338.25 $m^2$ , '15.6월 준공예정
  - 2센터 : 725 $m^2$ , '16.12월 준공예정
- 공간구성 : 사무실 및 회의실, 감정장비실, 전시 및 체험관, 수장고 등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대 상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귀금속·보석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업무
  - 시설물 관리·운영
  -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경영컨설팅
  - 감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사업
  - 기타 주얼리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소요예산 : 846백만원(2015년)

## 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사무의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주얼리산업발전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주얼리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의2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⑥ 시장은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사무의위탁)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5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